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박윤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의자 : 박윤옥, 이경숙, 김현택,
한송연, 전혜연, 이진환,
이수련, 원주영

1. 제안 이유

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·체계화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, 그 밖에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위원회 심의 기능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운영체계 명확화(안 제4조 ~ 제8조)
- 다. 위원회 운영 실무 규정 정비(안 제9조 ~ 제12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계법령 : 덧붙임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직”을 “구성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「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 3항에 해당하는 사항
5.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「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2. 「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

을 요청하는 사항

제4조를 삭제하고, 제5조를 제4조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5조)제2항 중 “보좌하며,”를 “보좌하며”로, “없는”을 “없을”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질병, 해외출장(6개월)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

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안건이 본인,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

2.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1회”를 “1회 개최하고”로, “때 또는”을 “경우 또는”으로, “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”를 “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9조) 본문 중 “위원·전문”을 “위원, 관계전문”으로, “수당·여비 등의 실비”를 “수당과 여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<u>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.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.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“ 4.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2조(기능) 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.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. 「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5.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

제4조(위촉직 위원의 임기) ① 위
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
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
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
기간으로 한다.

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
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
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
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
하기 어려운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
회의에 불참하는 경우

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
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「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
조성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
라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
사항
2. 「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
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시장
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<삭 제>
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
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
다고 인정되는 경우

<신 설>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생
략)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
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
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
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
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
으로 한다.

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
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
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 보좌하
며 -----
----- 없을 -----
-----.

제6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위
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
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
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
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

<신 설>

판단되는 경우

2. 질병, 해외출장(6개월)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

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안건이 본인,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

2.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·운영하며, 정기회는 연 1회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·제8조 (생략)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(생략)

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-----

----- 1회 개최하고

-- 경우 또는 -----
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
경우에 개최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·제10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-----
---- 위원, 관계전문-----
----- 수당과
여비-----

-----.

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2조(기능) 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3.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
- 제10조(의견의 청취 등)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 수반에 관한 요인인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